

의안번호	2214143
의 퇴 인	서삼석 의원
회 답 일	2025. 12. 15.
추 계 번호	25B61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제41조제1항·제4항, 제67조 및 제68조를 준용함. 이 경우 “면허”는 “허가”(제6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봄 ※ 「양식산업발전법」의 손실 보상 규정을 수산종자생산업에 준용하도록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 「양식산업발전법」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공익적 목적으로 양식업 면허를 제한 또는 정지하는 경우 해당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로 하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권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 「양식산업발전법」 상 손실 보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제한·정지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상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규정²⁾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면허의 제한·정지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 청구에 관한 규정은 준용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손실 보상의 대상, 보상의 기준·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하여 예측하기 곤란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서 공공사업 추진 등 공익적 필요에 따라 면허, 허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대한

1)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6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51조에 따라 면허·허가의 제한,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7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허된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의 제한,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1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

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양식업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8.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손실 보상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따른 보상을 위한 별도의 예산사업은 없으며, 통상 보상 관련 예산은 공공사업 추진 주체가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편성·운용하고 있음

[표 1]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 보상 예산 사례: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종류	2022	2023	2024	2025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	—	1,089	817
보령항로 신보령 및 온배수	전원개발사업	—	—	13,263	5,864
대산항 항로준설공사	항만법	—	—	—	20
용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항만법	163	—	—	—
당진 5~10호기 가동관련 온배수 어업피해보상	전원개발사업	—	—	406	82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1,864	1,282	—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항만법	—	1,649	126	—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	도로법	—	—	—	358
울릉공항 건설공사	공항시설법	—	—	—	334
군 작전용 00 설치공사	공유수면법	—	—	—	772
울산 Buoy 이설공사	항만법	—	—	—	10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 등 6개사업	신항만건설 촉진법	—	—	3,052	—
합계		2,027	2,931	17,936	8,257

주: 상기 자료는 보상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작성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